

구미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6. . .
발 의 자	김근한 의원 외 1인

구미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김근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6. 1. .

발 의 자: 김근한·김민성 의원(2인)

찬 성 자: 강승수·김낙관·김원섭·김춘남·
소진혁·이명희·이상호·이지연·
장미경·정지원 의원(10인)

1. 제안이유

중증장애를 가진 구미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정치적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 실현과 다양한 목소리 반영을 강화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지원신청 및 처리(안 제3조)
- 다. 지원범위(안 제4조)
- 라. 의정활동 보조인력에 관한 규정(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4. 조례안: 붙임

구미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를 가진 구미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정치적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 실현과 다양한 목소리 반영을 강화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의원”이란 구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신청 및 처리) ① 중증장애의원은 구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증빙자료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및 회의장 좌석 우선 배치
3.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내로 한다.

②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채용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공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의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추천서에 따라 해당 의원의 추천을 받아 채용할 수 있다.

③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며, 연봉은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연봉상한액 범위에서 정한다.

④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칙」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5조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와 관련하여 재정 수반요인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및 한시적인 경비로 예상됨
 -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기준표(근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5급(상당)		69,663
6급(상당)	86,606	57,708
7급(상당)	70,782	50,272
8급(상당)	62,096	44,296
9급(상당)	54,678	

4. 작성자

- 의회운영위원회 원윤정 주무관(행정번호 6447)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진단·재활·치료·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④ 시험실시기관은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6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임기제공무원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근무기간 동안 계속 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3. 파견자 또는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3개월의 범위에서 임용하는 경우. 다만, 결원 보충 등의 사유가 계속되어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전체 근무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용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5. 정책결정의 보좌를 위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중증장애인인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